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79

발의연월일: 2022. 1. 19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병욱·김정호

노웅래 · 송옥주 · 오영환

윤미향・이수진(비)・임종성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"협회") 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 무(제4호)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 지와 실제 운용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80조제4호). 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4호 중 "환경부장관"을 "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업무) 한국자동차환경협회	제80조(업무)
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환경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	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
로부터 위탁받은 업무	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
	부장관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